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4. 12. 8.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문구 홈페이지 (<http://www.sdm.go.kr>) 「입법예고」에 조례안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의견제출사항〉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주소, 성명 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전화번호
 - ※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(우편번호 : 120-703), E-mail : 8090@sdm.go.kr, FAX (02) 330-1368,
 - 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(02) 330-1914

1. 개정이유

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의거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‘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의 보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 신설 (안 제2조의2)
- 나. 위원회 제명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보완 (안 제6조)
- 다.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, 안 제6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일자리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조례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